

공고 제2023-1110호

# 2023년 하반기 종로구 동행일자리 추가 사업 등 참여자 모집 공고

종로구 2023년 하반기 동행일자리 추가 사업 등에 대한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3. 8. 24.

종로구청장



1. 신청 기간 : 2023. 8. 24.(목) ~ 9. 6.(수)
2. 근무 기간 : 2023. 9. 20. ~ 12. 20. [3개월]
3. 모집 인원 : 31명
4. 신청 장소 : 종로구 일자리플러스센터
  - ※ 일자리플러스센터 본소(종로구 종로1길 36, 종로구청 2층, ☎02-2148-3957~9)
  - ※ 일자리플러스센터 분소(종로구 지봉로5길 7-5, 종로구민회관 1층 안내창구 옆, ☎02-2148-4181)
5. 근무 장소 : 종로구청, 동주민센터 및 실외 현장 등
  - ※ 2023년 하반기 종로구 동행일자리 추가사업 모집내역 참조
6. 신청 방법 : 다음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일자리플러스센터 방문 접수
  - ※ 서울시 및 자치구 동행일자리 사업에 **중복 신청 불가**(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)
  - ※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

## < 구비서류 >

### < 필수사항 >

- ①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(일자리플러스센터 비치, **희망 사업번호 기재**)
  - ※ **사업번호** : 2023년 하반기 종로구 동행일자리 추가사업 모집내역 참조
  - ※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**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**
-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동의서 (일자리플러스센터 비치, 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)
- ③ 구직등록확인(필)증 (종로구 일자리플러스센터, 서울시일자리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)
- ④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(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)

### < 선택사항 > : 가점대상 확인 (**해당자에 한해 제출**)

- ▷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,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주여성, 장애인 및 가족 등 증빙서류
- ▷ 여성가장(세대주) -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
- ▷ 재산 469백만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,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
- ▷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-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

## 7. 신청자격

-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자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

### 참여배제 대상(접수일 기준)

- ▶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, 실업급여 수급자

※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(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)

- ▶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75% 초과 혹은 재산(주택, 자동차 등)이 469백만원 초과인 자

(단위 : 원/월)

가구원 수	기준중위소득 75%
1인	1,558,419
2인	2,592,116
3인	3,326,112
4인	4,050,723
5인	4,748,016
6인	5,420,986

※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(동거인 포함)

※ 근로소득은 고용산재, 국민연금, 국세청 순으로 조회한 소득정보 활용, 기타소득은 군인연금, 국세청 종합·사업소득 모두 합산

- ▶ 1세대 2인 참여자

- ▶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 (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)

- 60세이상 고령자 :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,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

- 쪽방주민, 장애인 및 노숙인 :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, 연속참여 3회 허용

- ▶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

- ▶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

- ▶ 아동·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, 「아동·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아동복지법」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

- ▶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

- ▶ 정부 훈령·예규·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

- ▶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·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

## 8. 선발기준

- 사업별 자격(우대)조건, 재산보유액,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, 세대주, 부양가족 수, 취업 취약계층, 자격증, 사업별 고려요소 등

-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

-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

※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

-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

## 9. 임금 및 근로조건

- 임금 조건 : 1일 58,000원, 부대경비 6,000원 별도 지급 ※ 6시간 근무 기준
- 근로 조건 : 1일 6시간 이내, 주5일 근무원칙, 주휴·연차수당 지급
  - ※ 만 65세 이상 : 1일 4시간까지만 근무 가능
  - ※ 사업별 특성상 주말,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(단, 주말,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)
- 4대보험 직장 가입 :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

## 10. 합격자 발표 : 2023. 9. 18.(월) 예정 ※ 합격자 유선통보

- ※ 동행일자리사업 참여배제 대상은 선발심사 시 제외되며, 별도의 탈락 안내를 드리지 않습니다.  
신청자 본인이 참여배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11. 문의사항 : 종로구 일자리경제과(2148-2255)

- 붙임 1. 동행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각 1부.  
2. 2023년 하반기 종로구 동행일자리 추가사업 모집내역 1부. 끝.